

고성군 엄홍길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(의안번호 제3078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. 3. 13.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: 2026. 3. 13.

다. 상정·의결일자: 2026. 3. 25.

산업경제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녹지공원과장 김주화)

가. 제정이유

- 엄홍길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시관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2) 엄홍길전시관의 명칭과 위치(안 제3조)
- 3) 엄홍길전시관의 기능(안 제4조)
- 4) 엄홍길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주체(안 제5조)
- 5) 엄홍길 전시관의 개관, 휴관, 관람시간 등(안 제6조 ~ 제9조)
- 6)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(안 제10조)

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, 제28조
- 2)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3)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 - 개선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6761(2026. 2. 6.)호]

4) 기 타

-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6-290호
 - 예고기간: 2026. 2. 10. ~ 2026. 3. 3.(21일간)
 -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조호철)

- 본 조례안은 고성군이 설치한 엄홍길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,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관리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
- 또한 조례의 구성과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 조례의 일반적인 체계에 부합하며, 조문 내용 또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6. 3. 25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